

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 공지용)

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 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 기관에 지원. 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1)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1차) : 2024. 04. 29.(월) ~ 06. 07.(금) 까지

2) 기업 및 학생 신청 기간 (2차) : 2024. 06. 10.(월) ~ 06. 28.(금) 까지

다. 신청방법: 올인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 입사 지원을 완료 후 최종합격 시 학생 포털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정	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1)	일반선택	계절제	1	4주(1개월) 이상 (8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택	계절제	2	4주(1개월) 이상 (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택	계절제	4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3. 실습기간

가. 계절제(하계) 현장실습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4주(1개월) 및 8주의 실습이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4주(1개월)	2024.06.17.(월)	2024.08.15.(목)	· 기간 내 4주 (1개월) 설정 가능
8주	2024.06.17.(월)	2024.08.30.(금)	· 기간 내 8주 설정 가능
* 23. 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절차 기간을 준수 해야 하므로 2024. 07. 16(화)까지 실습을 완료 하여야 함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가. 계절제 :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신청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4주: 4만원 8주: 8만원)

다.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 학기 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업(기관)

바.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2024년도 월 최저임금기준 75%)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사.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 참여제외 기업(기관)

1)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2)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3)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 (용업업체 포함)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 신청에 대한 실습지도 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와 '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7.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 직장예절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명

나.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

다.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

8.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 요청 사항

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나. 실습지원비 지급 (직무교육 배정시간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지급)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75% 이상 지급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50% 이상 지급

9. 기관 지원 사항

가. 실습기관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

(※ 단, 실습 종료 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혹은 이체 확인증 및 기관(명)으로 된 통장 사본, 각 1부씩 제출 요망)

10. 유의사항

- 가. 실습 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 (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07. 16.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 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나. 현장실습 (국내, 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단,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 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 사.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와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불가)

※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기 바랍니다.

11. 실습 기관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12. 평가 및 학점인정

- 가.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 주간활동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기관성적표,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출근상황부	10	결근 1회당 2점 감점
주간활동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종합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현장실습기관성적표	4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
실습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합계	100	Pass / Fail

- 나.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 '일반선택'의 교과구분으로 학점을 부여

13. 실습지원비

- 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시간	실습기관의 정규근로일수(주 5일) 및 시수 동일하게 운영	주 5일 중 1일 6시간 이상 실습원칙 단, 무급으로 운영시 주 15시간 이내 2개월 이내로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야 함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 이하 (직무 중심)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 50 이하 (교육 중심)
★실습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 (10~25%이하)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 최소 75%(1,545,555원)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 2024년도 최저임금 - 2,060,740원	교육시간(25~50%이하)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소 50%이상 지급
보험가입 유무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계약 체결	실습기관 필요에 따라 체결 가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범위 안)	체결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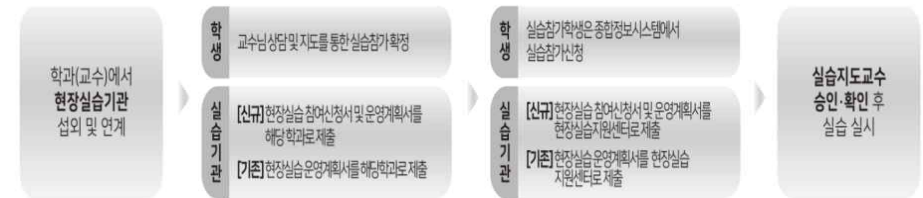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무급)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 간에 사전 동의 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11. 신청 방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1)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연계
 -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 3)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 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4)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 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 ①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 참가 확정
- ②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실습기관에 있는 직원은 '실습가능기관목록'에서 실습기관 정보 확인 후 자신이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지원 후 선발에 해당하면 현장실습지원서 작성 비임.

※ 학 및 일당이 중단강우 해당기간 해주시 변경 후 신청을 하십시오.

유리사항 및 교육과정 |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

유리사항
 ▶ 현장실습 신청자격(예 후학성 등 대학 기초과목 졸업연기자 신청불가)
 가. 계절제 2개 학기 이상 재학상나 학기제 5학기 이상 재학상
 나. 조기졸업신청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이전까지 학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완료 하여야 학업을 진행 변경 할 수 있음.
 다. 국내 영등실습 제외영등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라.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목	학점	실습시간
국내현장실습(2)	일반선학	계열제	2	4주 이상(16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3)	일반선학	계열제	4	8주 이상(320시간 이상)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학	특기제	12	66주 이상(640시간 이상)

③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

수업업무 | 학적 졸업 | 등록 장학 | 학생업무 | **취업 산학** | 국제교류 | 공통

취업 산학 | 메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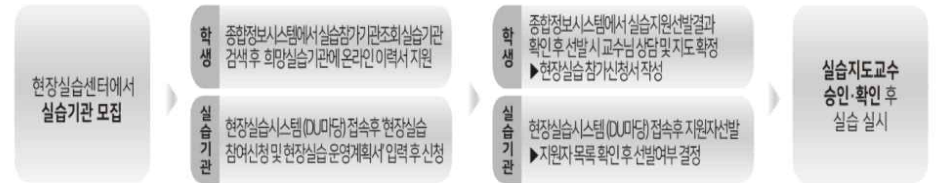
- 국내현장실습
 - ▶ **현장실습참가 신청**
 - ▶ 주간실습일지 작성
 - ▶ 종합보고서 작성
 - ▶ 실습지원이력서 등록
 - ▶ 실습가능기관 조회
 - ▶ 실습기관 이력서제출
 - ▶ 실습지원발결과 조회
 - ▶ 현장실습 출석부 조회
 - ▶ 학업인용서류 제출현황
 - ▶ 가상계좌 조회
 - ▶ 현장실습 인증서
 - ▶ 현장실습참가 조회

-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 (학적, 등록/장학 등)에서 수정하여야 함
-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16주 또는 20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
-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 **희망실습은 지도하실 교수님을 '찾기'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
-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 클릭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
- 5)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회' 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실습가능기관 계획서 '보기' 클릭 시 아래내용 (실습정보) 확인>

* 실습기관이 조회가 안될 시 현장실습지원센터(850-5618, 850-5614) 로 연락 바랍니다.

수업업무 | 학적 졸업 | 등록 장학 | 학생업무 | **취업 산학** | 국제교류 | 공통

실습가능기관 조회

취업 산학 | 메뉴 목록

실습가능기관 조회

현장실습참가 신청

주간실습일지 작성

종합보고서 작성

실습지원이력서 등록

실습가능기관 조회

실습기관 이력서제출

실습지원발결과 조회

현장실습 출석부 조회

학업인용서류 제출현황

가상계좌 조회

현장실습 인증서

현장실습참가 조회

②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

*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실습지원'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

- 실습기관 '찾기'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

-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 이력서 '접수'로 표기됨

-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선발'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후 '신청서'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

* 유의사항

- 실습지원 상태 '접수' 및 '선발'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

- 실습지원 상태 '탈락' 및 '신청취소'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단,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접수"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

-선발 확정 후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공통사항 **학과(교수) 연계형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①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현장실습신청서관리'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

-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 상태가 '접수'로 표시됨

- 실습지도교수님이 '승인'처리 시 : 상태가 '대기'로 표시됨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확인' 처리 시 : 상태가 '통과'로 표시됨

※ 상태가 '통과'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

나. 실습일지(주간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작성

① 실습시작 후 '주간실습일지'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실습이 종료되는 마지막날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학점 지급 가능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② 실습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단, 실습 기관 소개 및 건의 사항 글자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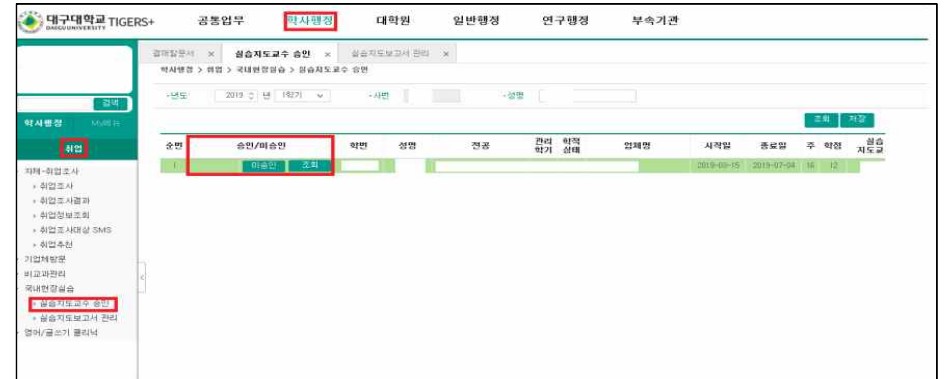
12. 실습지도 교수님

-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

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시스템에서 승인/미승인 처리

※ TIGERS+(교원) → 학사행정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교수 승인

※ 조회 클릭하시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



※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

- 현장실습지도

가.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 유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

나.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출근 상황,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실습지도보고서' 작성(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

다.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

- 1) 메뉴 : TIGERS WEB+(교원시스템) 접속 - 학사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보고서
- 2) 지도기간 :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
- 3) 우측의 '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정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4학년도 계절제(하계)

학기제 현장실습 4주(1개월)		학기제 현장실습 8주 / 320시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4-06-17(월)	2024-07-16(화)	2024-06-17(월)	2024-08-11(일)
2024-06-18(화)	2024-07-17(수)	2024-06-18(화)	2024-08-12(월)
2024-06-19(수)	2024-07-18(목)	2024-06-19(수)	2024-08-13(화)
2024-06-20(목)	2024-07-19(금)	2024-06-20(목)	2024-08-14(수)
2024-06-21(금)	2024-07-20(토)	2024-06-21(금)	2024-08-15(목)
2024-06-24(월)	2024-07-23(화)	2024-06-24(월)	2024-08-18(일)
2024-06-25(화)	2024-07-24(수)	2024-06-25(화)	2024-08-19(월)
2024-06-26(수)	2024-07-25(목)	2024-06-26(수)	2024-08-20(화)
2024-06-27(목)	2024-07-26(금)	2024-06-27(목)	2024-08-21(수)
2024-06-28(금)	2024-07-27(토)	2024-06-28(금)	2024-08-22(목)
2024-07-01(월)	2024-07-31(수)	2024-07-01(월)	2024-08-25(일)
2024-07-02(화)	2024-08-01(목)	2024-07-02(화)	2024-08-26(월)
2024-07-03(수)	2024-08-02(금)	2024-07-03(수)	2024-08-27(화)
2024-07-04(목)	2024-08-03(토)	2024-07-04(목)	2024-08-28(수)
2024-07-05(금)	2024-08-04(일)	2024-07-05(금)	2024-08-29(목)
2024-07-08(월)	2024-08-07(수)	2024-07-08(월)	2024-08-31(일)
2024-07-09(화)	2024-08-08(목)		
2024-07-10(수)	2024-08-09(금)		
2024-07-11(목)	2024-08-10(토)		
2024-07-12(금)	2024-08-11(일)		
2024-07-15(월)	2024-08-14(수)		
2024-07-16(화)	2024-08-15(목)		

※ 유의사항

- 학기제 국내 현장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건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
단,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 (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07. 16.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주말 및 법적 공휴일은 실습 시작 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

■ 붙임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실시 [] ▪주기적/상시적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시간 기준]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하세요. (4주 / 8주)
	운영 / 지도 계획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학생 요건	전공 (인원)	00학과 1명, 000학과 1명 또는 000학과/000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